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회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166 발의연월일: 2022. 6. 28.

발 의 자:김회재·권칠승·김두관

김상희 · 김정호 · 김주영

맹성규・송옥주・신동근

윤영덕 • 이병훈 • 전혜숙

정일영 · 최기상 · 홍성국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·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 트 등이 부족한 실정임.

미국, 노르웨이, 일본, 독일 등 해외에서는 경관이 우수하거나 자연 자원,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여 운 영하고 있음.

이에,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가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이동성과 편의성 중심의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 도로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,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에 기

여하고자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관광도로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10호) 관광도로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정의규정에 명시함.
- 나. 관광도로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(안 제48조의2, 제48조의3) 도로주변의 경관이 우수하고 주변지역에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하고,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·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고시토록하는 절차를 규정함.
- 다.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 구축·운영근거 마련(안 제60조의2)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자체·공공기관·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구축 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일반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"관광도로"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도로 주변의 경관이 뛰어나고역사·문화·예술·생태 등 지역의 특징을 가진 주요도시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제2조제1호의 도로(제10조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는 제외한다) 중에서 제48조의2에 따라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정·고시된 도로를 말한다.

제5장에 제48조의2, 제48조의3 및 제6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8조의2(관광도로의 지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의 관광도로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노선에 대하여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.
 - 1.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이 우수할 것
 - 2. 주변지역에 고유한 역사·문화·예술·생태 등 자원이 풍부할 것
 - 3. 주변지역이 관광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양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관광·휴양 거점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

- ②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도로에 대하여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할수 있으며, 관광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의 노선이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일반국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의 요청이 없어도 직접 지정할 수 있다.
- 제48조의3(관광도로의 지정절차 등) ① 시·도지사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관광도로에 속하는 도로의 노선번호, 노선명
 - 2. 관광도로의 기점·종점·주요 통과지
 - 3. 관광도로의 지정 필요성
 - 4.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
 - 5. 관광도로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·문화·예술·생태 등 지역자원 현황
 - 6. 관광도로의 경관 제고 및 조성에 관한 사항
 - 7. 관광도로의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
 - 8. 관광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 및 주민참여 제고에 관한 사항
 - 9. 관광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10. 관광도로의 관리 ·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

한 사항

- 11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관광도로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광도로관리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를 지정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를 지정한 경우 이를 즉시 관보에 고시하고, 시·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관련 시·도지사 및 도로관리청과 협의 한 후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- 제60조의2(관광도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·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를 수집·가공하여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관광도로구역 안내 정보체 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데이터의 제출 등 관광도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관광도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0. "관광도로"란 해안권 또는</u>
	내륙권 도로 주변의 경관이
	뛰어나고 역사・문화・예술・
	생태 등 지역의 특징을 가진
	주요도시 또는 관광지 등을
	연결하는 도로로서 제2조제1
	호의 도로(제10조제1호 및 제
	11조에 따른 고속국도는 제외
	한다) 중에서 제48조의2에 따
	라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정
	•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.
<u><신 설></u>	제48조의2(관광도로의 지정) ①
	국토교통부장관은 시・도지사
	의 관광도로 지정 요청이 있는
	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
	하는 노선에 대하여 관광도로로
	지정할 수 있다.
	1.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
	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이 우
	<u>수할 것</u>
	2. 주변지역에 고유한 역사 • 문

화·예술·생태 등 자원이 풍 부할 것

- 3. 주변지역이 관광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양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관광·휴양거점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
- ②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도로에 대하여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광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의 노선이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 는 해당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 다.
- ③ 일반국도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·도지사의 요청이 없 어도 직접 지정할 수 있다.

제48조의3(관광도로의 지정절차 등) ① 시·도지사가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작성·제출하여야한다.

<신 설>

- 1. 관광도로에 속하는 도로의 노선번호, 노선명
- 2. 관광도로의 기점·종점·주 요 통과지
- 3. 관광도로의 지정 필요성
- 4.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
- 5. 관광도로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·문화·예술·생태 등 지역자원 현황
- 6. 관광도로의 경관 제고 및 조성에 관한 사항
- 7. 관광도로의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
- 8. 관광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

 역산업 발전 및 주민참여 제

 고에 관한 사항
- 9. 관광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10. 관광도로의 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확보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관광 도로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・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

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할 경 우에는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 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광도로관리계획 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로정책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를 지정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 를 지정한 경우 이를 즉시 관보 에 고시하고, 시·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관련 시·도지사 및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후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제60조의2(관광도로 관련 정보체 계의 구축·운영)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 통정보·관광정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·가공 하여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관

<신 설>

광도로구역 안내 정보체계를 구 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 런 기관에 데이터의 제출 등 관 광도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관광도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